

학사경고 연속 3회자에 대한 재교육관리규정(3-5-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5조 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사경고 연속 4회자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

제2조(대상) 학사경고 연속3회로 인한 제적 대상자중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학부(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

1. 해당학기 평점평균 1.80이상인 자로 F학점이 2과목 이하인 자.

2. 해당학기 평점평균 2.0미만인 자로 F학점이 없는 자.(개정 2001. 12. 1),(개정 2009. 2. 18)

제3조(재교육시기) ① 학사경고 연속3회째 해당학기의 방학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사경고 연속4회를 받고 입대한 자중 재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그 시기를 전역 후 1년 이내로 제한한다.(개정 2001. 12. 1)

② 학기별 재교육기간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공고한다.

제4조(재교육방법 및 범위) ① 학사경고 연속3회자 중 재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시행한다.(개정 2001. 12. 1)

② 재교육의 범위는 대상자의 학사경고 연속4회 해당학기 수강과목 중 2과목 이내로 한다. (개정 2001. 12. 1)

③ 재교육은 학기 중 해당과목의 교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교수 재량으로 우수학생(해당과목성적 A+ 이상) 1명을 선발하여 특별학습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재교육결과 판정) ① 담당교수는 재시험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재교육의 성적은 일반학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단, 학사경고나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한다.

③ 재교육 결과 해당학기 평점평균이 2.0 이상일 경우 제적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1),(개정 2009. 2. 18)

④ 재교육의 기회는 1회로 제한하며, 재교육 결과 제적유보 판정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이후다시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제적처리한다.

제6조(교육비) ① 교육비는 재교육 희망자의 부담으로 하며, 매학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공고한다.

② 특별학습 지도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199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